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 “전국 자율학교의 선도학교”

발행일: 2019.9.2.	<h1>가정통신문</h1>		부서: 방 과 후 부	
			담당자: 김 승 겸	
(54572) 전북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85	교무실	TEL (063)836-6012 FAX (063)724-4252	행정실	TEL (063)836-6010 FAX (063)836-8683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안내 및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에 따른 강좌 개설 및 수강료 책정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2019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녀의 특기·적성 및 학업 능력 향상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기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19년 9월 9일(월) ~ 2019년 12월 5일(목)
2.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과, 특기적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자유수강권으로 수강료가 지원되며, '2018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중 1순위, 2순위는 2019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선정과 무관하게 1/4분기까지 지원' 받으며 또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5월경 예정)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수익자부담경비를 스쿨뱅킹 통장으로 환불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3. 개설 강좌 및 수강료

2학기 방과후학교 7차일반 1학년 개설 강좌 및 수강료					수강료(원)	수강신청 강좌○표기	수강료 납부 안내
학년	순	강좌명(학급)	시 수	강 사			
1 학 년	1	국어(학급별 개설)	20	본교 교사	22,400		수강 신청한 강좌 수강료 총액을 스쿨뱅킹계좌 통장으로 입금
	2	수학(학급별 개설)	20	본교 교사	22,400		
	3	영어(학급별 개설)	20	본교 교사	22,400		
	수강료 총액						

4. 납부방법 : 스쿨뱅킹계좌 통장으로 입금(잔액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인출이 안 되오니 통장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납부기간 : 2019. 9. 16(월) - 2019. 9. 27(금) 까지 스쿨뱅킹
6. 환불규정 : 가정통신문 뒷면 '2019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과후 담당교사(063-724-42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KSAN HIGH SCHOOL
익산고등학교장

(직인생략)

2019학년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반환 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학습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 수업을 포기한 경우는 반환 규정에 의거하여 스쿨뱅킹을 통해 반환한다.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	인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정당한 수강포기 사유에 의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기타사항	1) 위의 반환 기준일은 학생 및 학부모가 수강 취소 의사를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에게 수강 취소 확인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반환은 수강 취소 신청을 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종료 후에 스쿨뱅킹을 통해 반환 처리한다. 3) 교재비, 재료비의 경우 주문 완료 후 반환되지 않으며 주문 이전에 수강 취소를 한 경우에만 프로그램 강사가 반환 처리한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에 준한다.			